

대전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101878 판결 [계약해지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전 문

원고사회복지법인 A

피고1. 주식회사 B

2. C단체

변론 종결2018. 5. 17.

판결 선고2018. 6.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97,1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단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피고 C단체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1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단체(이하 '피고 C단체'라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원고는 장애인, 노인, 아동을 위한 자활터전,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고철수집 및 판매업, 폐전선, 폐기물수집 운반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또한 피고 C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의 D 및 같은 항 제6호의 E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C단체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불하받은 후, 위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제3자에게 위 사업을 위탁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 C단체는 2005. 10. 10. F에게 피고 C단체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불하받은 폐기물의 처리 및 수집, 운반(이하 '폐기물 처리업'이라 한다)을 위탁하면서, F가 피고 C단체의 명의로 위 폐기물 처리업을 수행하되, 위 폐기물 처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F가 부담하고, 대신 매출액의 3%를 피고 C단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단체는 2013. 4. 26. 주식회사 KT로부터 불용 동케이블(폐전선)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단체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을 위탁받은 F는 2013. 6. 25. 피고 B과 사이에 위 불용 동케이블(폐전선)의 충청지역 할당분을 피고 B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는 2013. 7. 11.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8. 29. 원고와 사이에 위 KT불용품(폐전선) 처리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T불용품(폐전선) 처리 및 공급계약서

(사)G 산하 불용품처리사업소(주식회사 B)(이하 '갑'이라 한다)와 KT로부터 공급 받는 불용품을 재활용 및 처리하는 '갑'의 대행사인 H(사회복지법인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품목 및 공급물량) 1. KT와 (사)G, C단체와 산하 불용품 처리사업소(주식회사 B)사이에 계약된 첨부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품목 및 공급물량은 폐전선 1,000t으로 한다.

제3조(공급단가) 1. '갑'이 물량 배정표를 최초 수령할 당시의 시세대비환율과 수율을 반영한 출고 단가에 이윤 kg당 300원을 '을'에게 보장하여 출고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서면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최고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첨부서류

1. KT와 (사)G의 물품 공급 계약서 사본
2. C단체와 G 불용품사업소((주)B)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서 사본
3. '갑'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서 사본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2013. 11. 5. 950,000,000원, 같은 달 23. 68,000,000원 합계 1,0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 B은 2013. 11. 5.부터 2014. 3. 1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720,858,600원 상당의 폐전선 133,749kg만을 공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은 2017. 4. 14.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97,141,400원(선급금 1,018,000,000원 - 폐전선공급분 720,85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단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단체는 F를 그 폐기물 사업소 사업소장으로 임명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F가 피고 C단체 사업소장의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단체이다. 가사 피고 C단체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단체는 피고 B에게 피고 C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단체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단체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단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KT불용품(폐전선)을 공급받는 대가로 피고 C단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사업상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피고 B에 귀속되고 그 사업도 피고 B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운영하는 바,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단체가 아닌 피고 B이다. 또한, 피고 C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가사 상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피고 C단체의 수익사업 운영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 C단체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1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상단 및 하단에 계약당사자로 'G 산하 불용품처리사업소(주식회사 B)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된 사실, F가 'G 폐기물, 환경사업소 사업소장 F'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5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계약서 하단의 공급하는자란에 피고 C단체의 인감도장이 아닌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② 원고의 수익국장 H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3. 8. 29. 협력업체 등록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하단의 공급하는자란에는 피고 B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 B의 계좌 및 그 직원인 I, J의 각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단체와 별개의 법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단체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단체가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단체가 F에게 피고 C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수행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피고 C단체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하여 국가기관 등과 수의계약의 형태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피고 C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위 관련 법령의 규정을 잠탈하여 수익사업을 해온 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규칙 [별표 8], 같은 법 제27조, 제68조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영업정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원고 역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KT→피고 C단체→피고 B→원고』의 순서대로 체결된 각 계약에 따라 그대로 재위탁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갑 1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피고 C단체의 위와 같은 사업방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피고 B 및 그 직원의 계좌에만 입금하였을 뿐, 피고 C단체의 계좌에는 입금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 영업주를 피고 C단체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오인에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단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동희

판사오선아

판사박성수